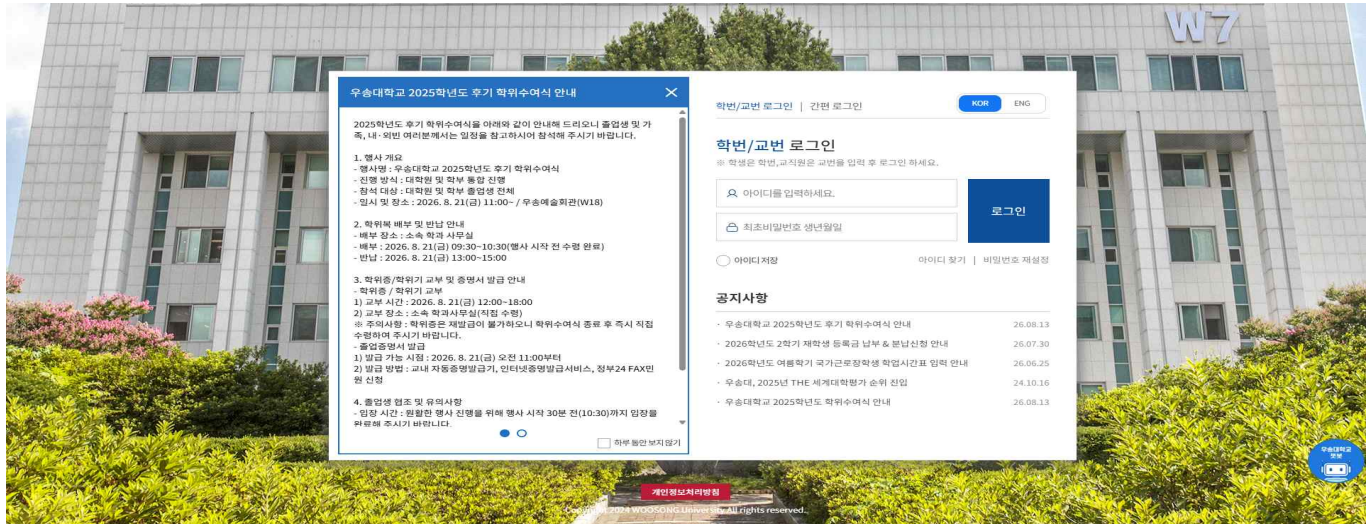


우송대학교 공결신청 매뉴얼 (학생용)

1. 대학정보시스템 로그인.

-->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대학정보시스템에 로그인.



2. 공결신청

--> 학사관리_교과/수업_수강관리_공결신청 (학생용) 화면으로 이동하기

대학구분: 우송대 | 년도: 2026 | 학기: 1학기 | 공결시작일자: 2026-03-20(금)

공결신청: 7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대회, 세미나 | 근거서류: [첨가] [다운로드]

순번	년도	학기	공결신청일자	개설학과전공	과목명	과목번호	분반	학번	성명	공결사유	진행상태
1	2026	1학기	2026-03-20	철도건설시스템학부 글로벌...	FreshmanSeminar	0000604	001			6. 병역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...	승인
2			2026-03-19	철도건설시스...	ModernRailw...	0013...	001			6. 병역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...	승인
3			2026-05-28	철도건설시스...	ModernRailw...	0013...	001			7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대회, ...	승인
4			2026-03-19	SIS.ECIS교양	AIIEPCommun...	0014...	001			6. 병역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...	승인
5			2026-04-28	SIS.ECIS교양	AIIEPEnglish...	0014...	005			7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대회, ...	승인
6			2026-03-19	SIS.ECIS교양	AIIEPCoreEng...	0014...	006			6. 병역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...	승인
7			2026-04-28	SIS.ECIS교양	AIIEPCoreEng...	0014...	006			7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대회, ...	승인
8			2026-03-19	SIS.ECIS교양	AIIEPEnglish...	0014...	005			6. 병역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...	승인
9			2026-05-28	SIS.ECIS교양	AIIEPCommun...	0014...	001			7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대회, ...	승인

위 그림과 같이 ①신청하고자 하는 날짜를 클릭 후 조회 -> ②아래 공결신청 탭에서 공결사유 및 공결신청 과목 선택 -> ③근거서류(스캔) 첨부 -> ④신청버튼 클릭하여 공결신청

*진행상태가 신청인 상태에서만 학생이 신청취소 가능

※ 주의사항 ※

1. 공결신청은 「성적평가 및 처리규정」 제8조의 별표1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한정하며, 사유별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반려될 수 있음(신청 후 반드시 승인 또는 반려여부 확인).
2. 부정한 방법으로 공결신청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3. 첨부된 「성적평가 및 처리규정」 제8조의 별표1의 '출석인정의 종류 및 기간 등' 내용을 숙지 후 신청 요망.

[별표1](신설 2016.10.10.)(개정 2020.09.01.)(개정 2021.02.16.)(개정 2025.03.21.)(개정 2025.12.17.)

출석인정의 종류 및 기간 등

1. 인정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

인정사유	인정기간	증빙서류
1. 가족의 사망		
1-1. 부모·배우자·형제·자녀의 사망(배우자가족 포함)	당일부터 5일 이내(휴일 포함)	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
1-2. (외)조부모의 사망(배우자가족 포함)	당일부터 3일 이내(휴일 포함)	
2. 질병, 사고로 입원한 경우	실제 입원기간(최대 4주 이내)	입퇴원확인서류
3. 1급 및 2급 법정감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	지정된 격리기간(최대 4주 이내)	감염병확진확인서, 백신접종확인서, 자가격리증명서, 보건소통보문서 등 관련 서류(단순 진단서는 불가)
4. 질병, 사고에 의한 당일 진료	진료 당일(학기당 3회 이내)	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
5. 본인의 결혼 또는 출산	·본인 결혼 : 당일부터 7일 이내(휴일 포함) ·본인 출산 : 4주 이내 ·배우자 출산 : 당일부터 7일 이내(휴일 포함)	혼인 또는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6. 병역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검사·소집 및 훈련(정규복무제 외)	해당기간	징병검사통지서, 훈련참석 확인서 등 관련 서류
7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대회, 세미나, 행사 등의 참여	총장의 인정기간(14일 이내)	소속 학과장 또는 관련 부서의 확인 공문
8. 자격증 시험, 취업을 위한 면접·입사시험·신체검사 등에 참여	해당일	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
9. 재학 중 취업한 경우	해당 학기에 취업한 기간	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(사실)확인서
10. 1호 내지 9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총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	해당기간	총장이 인정(승인)한 공문 등
11. 특별시험 합격	해당 학기 기간	특별시험 합격 증빙서류

1. 절차 및 제출서류 등

- 1) 위에 따라 출석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(단,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학과장의 승인으로함).
- 2) 제9호의 적용은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재학 중 3학년 2학기(수업연한 2.5년초과 이수 자)부터로 함.
- 3) 제11호의 적용은 「특별시험에 관한 학점인정 세부지침」에 의한 관련 교과목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함.